

1 학교생활 인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배곧해솔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이라 하며, [붙임]교육부 고시 제 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를 포함한다.

제2조 【목적】 ① 이 규정은 배곧해솔중학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 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 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교원이 [붙임] 고시에 따라 행한 학생생활지도는 법령과 학칙에 의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포함된다.

제3조 【적용 근거】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에 근거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 【학교생활인권규정 적용의 원칙】 ①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적용은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적용은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적용은 학생의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지도하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⑤ 학생에게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장 학생 생활

제5조 【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적,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의사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의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 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을 경우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8조 【자치활동】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체득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자치회, 학생자치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기본 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타인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 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하여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타인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2조 【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3조 【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한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 중 한 곳 이상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학급 담임교사 혹은 해당 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신고함
3.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SOS 지원단 ☎ 1588-9128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 1588-7179
5. 경찰청 ☎ 112,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 1388

③ 학교는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보호 조치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14조 【소지 금지 물품과 검사 등】 ① 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흉기류(학용품 이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 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 화기류), 향정신성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이 제1항의 물건을 소지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생명·신체 안전을 해하거나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지품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성의 교사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소지품 검사 대상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대상 학생의 동의 없어도 소지물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대상학생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⑤ 학생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대상 학생을 분리·보호하거나 보호자·경찰 등에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의 행위가 학교 교육에 미

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⑦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한 정기적,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⑧ 기타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제15조 【양성평등 및 이성교제】 양성평등 및 건전한 이성교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념한다.

1. 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2.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3.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해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학급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 남녀학생 단 들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5.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6. 교내에선 포옹 등 과도한 스킨십을 지양한다.

제16조 【동아리 활동】 특기적성교육과 동아리활동을 연계하여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 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동아리 활동 및 방과 후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관련지도부의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 교사로 둘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여가 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 시간을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을 자제한다.

제18조 【기타의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학급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입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6.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19조 【수업 태도】 ① 수업 시간은 절대 엄수한다.

- ② 수업 도중 외출을 금하며 부득이할 경우 교과 담임의 허락을 받는다.
- ③ 수업 시간 전에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한다.
- ④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⑤ 미인정 결과 및 조퇴를 하지 않는다.

제20조 【청소 활동】 ① 개인별 담당구역을 배정 받아 책임 있는 청소활동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분위기에서 생활하도록 한다.

- ② 청소 시간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 학생이 참여한다.

제21조 【사생활의 자유】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장소를 표시한다.

제22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당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4조 【교외생활】 ① 학생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고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화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에 알린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⑥ 교통 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⑧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는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25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 2.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26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7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4. 불법 카페,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한다.

제28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휴대전화는 등하교 시 휴대할 수 있으며 수업 시간 내 사용을 금한다.
- 2. 본인 및 타인의 학습분위기 침해 예방과 도난 및 분실 예방 차원에서 조회시간부터 종례시간까지만 담임교사에 의해 한시적으로 보관 조치한다. 단, 가정 사정으로 긴급하게 연락을 해야 하는 경우, 학부모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타의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 하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3.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방과 후 해당 학생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거나 학부모 등 보호자와 상담 후 돌려줄 수 있다.
- 4.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등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교육, 개인생활 등의 내용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금한다.
- 5.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3 장 용 의 · 복 장

- 제29조 【복장】** ① 교복은 동복, 춘추복, 하복으로 구분하며 항상 단정하게 입는다.
② 교복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동복 상의 바깥에 패딩이나 코트류의 방한 의류를 입을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가격의 의류는 지양한다.
④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⑤ 여학생의 경우 교복 치마와 바지의 구매나 착용 여부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제30조 【두발】** ① 학생의 두발 길이는 제한하지 않으나 학생 스스로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한다.
② 과도한 펌이나 염색 등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제31조 【화장 및 용모】** ① 지나친 색조화장 및 과도하게 현란하거나 고가의 액세서리 착용은 금지한다.
② 지나치게 화려한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는다.
③ 검은색을 제외한 컬러렌즈를 착용하지 않는다.
④ 과도한 네일아트는 하지 않는다.

- 제32조 【신발】** ① 등하교시에는 실외화를 착용하고, 교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② 교내에서는 흰색 실내화 또는 실내용 슬리퍼를 착용한다.

제 4 장 학 생 생 활 교 육 위 원 회

- 제33조 【설치】** 학생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제34조 【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심의
 2. 학생 인권 보호 및 학생 징계에 관한 기본 계획 심의
 3. 학생 징계 사안 발생에 따른 대처 및 회복적 생활교육 적용
 4. 기타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 제35조 【구성 및 직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분장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교사 1인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 구성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위원회 대표, 위원회의 업무 총괄
2. 부위원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 대행
3. 위원: 학생 징계 사항 심의
4. 간사: 위원회 심의 사항 준비, 회의록 작성 및 기록

⑤ 위 위원 중 기타위원은 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징계 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3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7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징계 사안에 대해 교직원 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고하고,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④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를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38조 【회의 소집】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직권 소집
2. 학생 징계 사안 관련 담당 부장의 요청
3.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청

제39조 【사안설명】 ① 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 업무 담당 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 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40조 【심의 절차】 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최

2. 심의 과정 설명
3. 사안 설명 및 질의·응답: 담당부서 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질의·응답
4.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 진술 및 질의·응답: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8. 징계 처분 내용 통보

제41조 【징계 내용의 관리 및 통보】 ① 학생 지도 담당 부서에서는 학생 징계 대장에 결정 내용을 기록, 관리하며 위원회 협의록을 기록한다.

② 징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 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 【결과처리·열람】 위원회 협의록은 나이스로 결재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43조 【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5 장 학생 생활 교육 ① (징계 외 생활교육)

제44조 【목적】 징계 외의 생활교육으로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 자세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키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제45조 【징계 외 학교생활교육의 원칙】 학생 지도 시 언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징계 외 생활교육에 대한 교사의 권한】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에 관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업권
2. 학생 지도권
3. 학생 징계 요구권

제47조 【징계 외 생활교육의 방법】 ①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 학생 생활교육을 실시한다.

구분	단계	내용	비고
1단계	약속 단계	학교공동체구성원의 생활 실천 약속	대화를 통한 훈계 및 훈육
2단계	약속 준수 단계	회복적 생활교육, 비폭력 대화	성찰교실
3단계	징계 단계	교육적 징계 조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② 약속 단계는 준법정신, 학습 활동, 공중도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할 시 대화를 통한 훈계 및 훈육을 실시하며 교사와 학생 상호 간 신뢰를 회복하는 학생 생활교육이다.
- ③ 약속 준수 단계는 약속 단계를 통한 학생 생활교육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정이 없을 시 성찰교실을 통해 학생 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학생의 특성에 따라 글 쓰면서 자신의 행동 되돌아보기, 규칙과 권리 생각하기, 상담하기, 독후감 및 감상문 쓰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등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학생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보건교사, 학교장 또는 교감은 학부모와 상담을 요청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 지도 교사는 학생 생활교육을 누가 기록하여 학생 지도에 활용한다.

- 제48조 【성찰교실】** ① 성찰교실은 1일 1시간 이내, 3일 이내의 기간으로 수업시간(학부모 동의시)이나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한다.
- ② 성찰교실 회부 및 참여 기간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 부서에서 정한다.
 - ③ 기타 구체적인 성찰교실 운영에 관하여는 “배곧해솔중학교 인권 친화 회복적 학생 생활 교육프로그램” 규정에서 정한다.
 - ④ 성찰교실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태만하는 학생의 경우 학생생활지도를 담당 부서 협의를 거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6 장 학생 생활 교육 ② (징계)

- 제49조 【징계 원칙】** ① 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권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 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品行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 ④ 학생에게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⑥ 징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 제50조 【징계 종류】**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선도)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선도】에 의거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출석정지
5. 징계의 기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1항 규정에 의해 징계를 할 경우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1항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제51조 【징계 방법】 ① 학교 내의 봉사

1.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생활안전부와 학년부의 상담 및 지도를 받는다.
4. 자아성찰활동, 상담활동, 독서활동, 봉사활동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

② 사회봉사

1.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3.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이수확인서 및 생활 일기를 담임교사 확인 후 생활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인솔한다.
6. 학교 내 봉사와 사회봉사는 일반 학생의 봉사활동과 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7. 공휴일 및 교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 삽입되지 않으며 그 기간만큼 순연된다.

③ 특별교육이수

1.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교육이수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특별교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치료 등의 교육과정 이수
 -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 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라. 상담 자원봉사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 마.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3. 특별교육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4. 특별교육이수는 생활안전부에서 확인 및 지도한다.
5.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인솔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 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전화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4. 출석정지 기간이 30일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제52조 【징계 기준】 학생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징계 기준			
		학교 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1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합산 10회 이상)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2	미인정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	○	○	○
3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4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
5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참여한 학생		○	○	○
6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7	흡연 또는 음주를 하거나 제공한 학생	○	○	○	○
8	청소년 유해약물을 소지 및 배포, 복용, 흡입한 학생	○	○	○	○
9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0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11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12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
13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14	징계 중 위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		○	○	○
15	도박을 한 학생	○	○	○	○
16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17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18	휴기를 휴대한 학생	○	○	○	○
19	무단가출 후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20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21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아 위법한 사실이 인정된 학생	○	○	○	○

22	수업 중 통신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조작한 학생	○	○	○	○
23	몸에 문신을 새겨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학생	○	○	○	○
24	그 밖에 법률에 위반하여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	○	○	○

- 제53조 【심의 절차】** ① 학생 징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② 학교장의 결재 다음 날로부터 집행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③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를 확정할 수 있다.
 ④ 1회 이상의 포상을 받은 학생은 그 정상을 참작하여 생활교육과 징계에 하향 적용할 수 있다.

제54조 【징계 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조치 내용, 결정 이유, 위반 조항, 조치 기간에 학생이 해야 할 사항,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유의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불복방법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제55조 【재심의 요구】** ① 학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재심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교장이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④ 재심 결과는 학교장 결재 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제56조 【조치 이행】 본 지침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조치 대상자, 조치 내용 등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제57조 【징계학생 고사응시】 특별교육이수 이하의 징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단, 고사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58조 【징계 경감】** ① 학교장은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학년부장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생활안전부장은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학년부장 및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의 단축을 건의할 수 있다.

- 제59조 【징계 해제】** ① 생활안전부장은 학교 내 봉사 및 사회봉사 대상 학생이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임교사 및 학년부장과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건의하여 해제할 수 있다.
 ② 징계 해제된 학생은 학생생활교육규정은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 【가중 처벌】 징계 대상 학생은 성실히 활동에 임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재가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당 학년 2회 이상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2. 목격자 및 증언자에 대해 보복행위를 한 경우
3. 증언,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위반 사실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제61조 【사후 지도】 담임교사와 학년부장은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과 지속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제 7 장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제62조 【목적】 본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해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3조 【기능】 ① 향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할 시 학생 인권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조례에 부합하도록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교육감이 제시한 규정 개정의 지침에 학교생활인권규정 등을 심의한다.

제64조 【구성】 ①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인원을 정하고,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②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 수와 동일하게 한다.

③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65조 【구성 방법】 ① 교원 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자치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인권·시민단체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제66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 ②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③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개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67조 【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 발의할 수 있다.

- 1. 개정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② 단, 제1항의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8조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9조 【검토 및 의견 수렴】 ① 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 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0조 【심의 및 결정】 ① 개정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71조 【공포 및 정보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72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73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붙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9. 1.]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 9. 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5조 【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6조 【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7조 【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8조 【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9조 【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 【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 【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학칙으로 정한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 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10분 이내 분리 후 복귀 (단위학교 재량 결정)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기타	* 지각의 기준을 학교 여건에 따라 명확히 설정 가능 * 위와 같은 지도에도 개선이 없거나 각 호에 따른 지도를 거부할 시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도함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 학칙으로 정한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2회차 : 주의 2회차임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반환 시기 : 수업 종료 후 또는 일과가 끝난 후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가위 칼 등), 라이터, 레이저빔, 호신용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위임을 받은 교사에게 신고 ※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위임을 받은 교사는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⑩ 교원은 제6항제3호·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⑪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 【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14조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6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 【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4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2. (개정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3. (시행일) 교육부고시(제 2023-28 호)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칙에 관한 특례)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4. 이 규정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하여 시행한다.